

2017년 북한경제 동향 분석 및 평가*

임수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 shlim@kiep.go.kr
최유경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 choijj@kiep.go.kr

I. 북한 무역 개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 대외무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무역 분권화를 통한 대외무역 확대 시도 2) 국산화 정책을 통한 수입대체산업 육성, 3) 의류품목을 중심으로 한 임가공무역 확대, 4) 노동자 해외파견 및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서비스무역 확대 등이다. 이러한 특징은 북한의 수출입구조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우선 산업생산 회복을 위해 제반시설을 현대화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 기술 향상과 관련하여 고위 기술 제품 수입, 중고위 기술 및 첨단기술 수입이 점진적으로 늘었으며 전자, 기계, 플라스틱, 고무, 금속제품 등의 수입도 증가하였다. 특히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수출 품목에 큰 변화가 생긴 점이 주목된다. 광물자원에 대한 대북제재가 실시되면서 의류품목과 수산물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부상하였다. 사실 북한 내부에서는 대북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인 2014년경부터 광물 수출 중심에서 의류 및 임가공 무역 중심으로 무역 패턴의 변화를 꾀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2017년 8월 및 9월 안보리 제재 결의안 2371호 및 2375호에 따라 수산물 및 의류제품 수출이 금지되면서 무역 패턴을 변화시켜보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 본고는 2017년 11월 29일에 개최된 「2017 북한경제연구자 대토론회」의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함.

II. UN/중국의 대북제재 현황

유엔 안보리는 2016년 3월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하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하였다. 결의안에는 민생 목적을 제외한 북한산 석탄 및 철광석 수출 금지 규정이 포함되었지만 사실상 제재의 효과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을 이유로 ‘민생 목적’ 유보 조항을 활용하여 동년 8월부터 북한산 무연탄 및 철광석 수입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6년 11월에 채택된 결의안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 쿼터제(4억달러 혹은 750만톤 한도)를 도입하였고, 2017년 8월에 채택된 결의안 2371호는 북한의 주력 수출 상품인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수출을 유보 조항 없이 전면 금지시켰다. 나아가 2017년 9월에 채택된 결의안 2375호는 기존 제재에 포함된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에 이어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남아 있던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시켰고, 원유 및 정제유의

〈표 1〉 UN/중국의 대북제재 현황

UN 대북제재	중국 대북제재
<p>2270호</p> <p>2016. 3.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석탄 및 철광석 수출금지(민생목적 제외) · 북한 금,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 수출금지 · 북한 수출입 화물 검색 의무화 	<p>중국 상무부 고시 2016년 11호</p> <p>2016. 4.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산 석탄 및 철광석 수입금지(민생목적 제외) · 북한산 금,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 수입금지
<p>2321호</p> <p>2016. 11. 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석탄 수출 상한선 설정 (4억 달러 혹은 750만톤) · 북한 조형물, 은, 구리, 아연, 니켈 수출 금지 	<p>중국 상무부 고시 2017년 12호</p> <p>2016. 12. 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SCR 2321호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금지
<p>2371호</p> <p>2017. 8.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석탄, 철, 철광석 수출 금지 · 북한산 납, 납광석, 수산물 수출 금지 · 북한 해외파견노동자 숫자 현 수준 동결 ·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 	<p>중국 상무부 고시 2017년 40호</p> <p>2017. 8. 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SCR 2371호에 따라 북한산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수입금지(9월 5일부터)
<p>2375호</p> <p>2017. 9. 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 원유 수출 연 400만배럴동결 · 대북 정유제품 수출 55% 감축 · 북한 섬유제품 수출 금지 · 북한 해외파견노동자 신규 계약 금지 · 북한과의 합작사업 금지 	<p>중국 상무부 고시 2017년 52호</p> <p>2017. 9. 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SCR 2375호에 따라 대북 석유제품 수출 제한(10월 1일부터 시행) ·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전면 금지(공고 당일 시행)

대북한 수출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중국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상무부 고시를 발표하여 대북제재를 집행해왔다. 특히 결의안 2321호부터는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동참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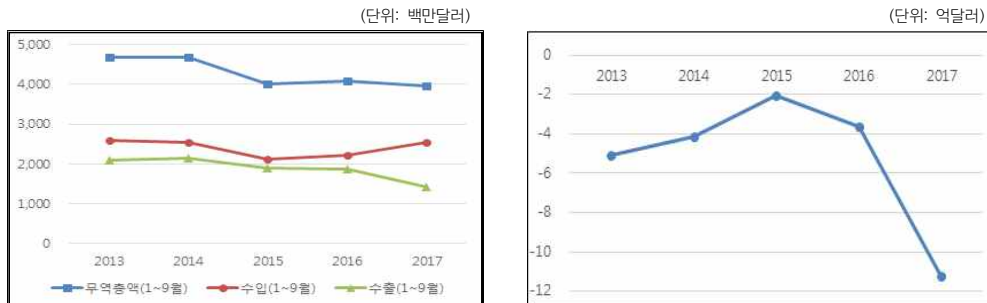
III. 2017년 북중무역 동향

1. 2017년 북중무역 동향

2017년 1~3분기 북중 간의 무역총액은 39억 5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3%) 감소하였다. 북한의 대중수출은 14억 2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8%(4억 4천만달러) 축소되었는데, 이는 대북제재의 여파로 해석된다. 반면, 대중수입은 25억 4천만달러로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14.4%(3억 2천만달러) 증가하였다. 수입 증가 품목 역시 식량이나 석유제품 등 제재 대비품목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모든 품목에 걸쳐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의 외화수입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중수입이 급증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다. 첫째, 최근 북한이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연하면서 생산 및 소비를 위한 수입품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은 1년 단위로 수출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기 때문에 직접 제재대상이 아닌 수입품목은 단기적으로 관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 당국이 정치적, 경제적 필요에 따라 기존에 축적된 외화를

[그림 1] 북한의 1~3분기 대중무역 추이(좌) 및 수지(우)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접속일: 2017. 11. 28).

활용하여 수입을 지속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수입 증가세는 올해 8월부터 꺾이고 있는데, 이것이 대북제재 효과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¹⁾

2017년 1~3분기 북한의 대중국 상품수지(원유 제외)는 11억 2천만달러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약 3.1배(7억 6천만달러) 이상 증가하여 역대 최대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북중 간 비공식 관행을 고려하면 이 수치가 정확하다고 볼 수 없으나 적어도 감소하는 추이 자체는 사실로 판단된다.

[그림 2]는 2016년 1월부터 북한 무역의 월별 트렌드를 나타낸 것이다. 북한은 2015년부터 수입을 줄이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캠페인을 벌여왔는데, 그 결과 수출입 간의 갭, 즉 무역적자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7년 2월부터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수출은 급감하는 반면, 수입은 급증하여 수출입 갭은 다시 크게 벌어지고 있다. 다만, 수출 제재는 수입 능력 감소를 불러오므로 수출입 간의 큰 갭이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 갭이 언제부터 얼마나 줄어들지는 북한의 정책과 수입능력, 즉 외화보유액에 달려있다.

[그림 2] 북한의 대중무역 월별 추이와 대북제재

(단위: 백만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접속일: 2017. 11. 28).

1) 10월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할 때, 전년 동기 대비 대중국 수출은 28% 감소하였고, 수입은 11% 증가하였다.

2. 2017 북중무역 동향: 주요 수출 품목

2017년 3/4분기까지 북한의 대중국 수출 추세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무연탄이 포함된 광물자원(HS27)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2%나 감소하였다. 특히 북한산 무연탄(HS270111)의 대중 수출액은 3~7월에 '0'을 기록하였다. 다만, 8월과 9월에 각각 13억 8천만달러, 4천4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가 10월에 다시 '0'을 기록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수입 중단 발표 전에 항구에 도착한 물량을 통관시킨 것이라고 해명한다 바 있다.

한편, 북한은 무연탄 수출 급감 피해를 상쇄시키기 위해 1~4월에 철광석 수출을 확대하였는데, 그 결과 철광석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335%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5월 이후 증가율이 33%로 급감하였고 6월 이후부터는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이런 와중에 유엔안보리 결의안 2371호가 채택됨에 따라 9월부터 북한산 철광석 제품의 수출이 전면 금지되었다. 그 결과 10월에는 수출액이 '0'을 기록하였다.

북한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은 2017년 상반기에도 전년 대비 88.8%나 증가하여 북한의 수출 손실분의 일부를 만회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6월부터 증가율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9월부터는 8월에 채택된 결의안 2371호에 따라 수출액이 '0'을 기록하였다.

북한의 대중국 의류(HS 61/62) 수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9.1% 감소하였으나, 광물 제재의 여파로 처음으로 광물 자원을 제치고 수출 1위 품목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9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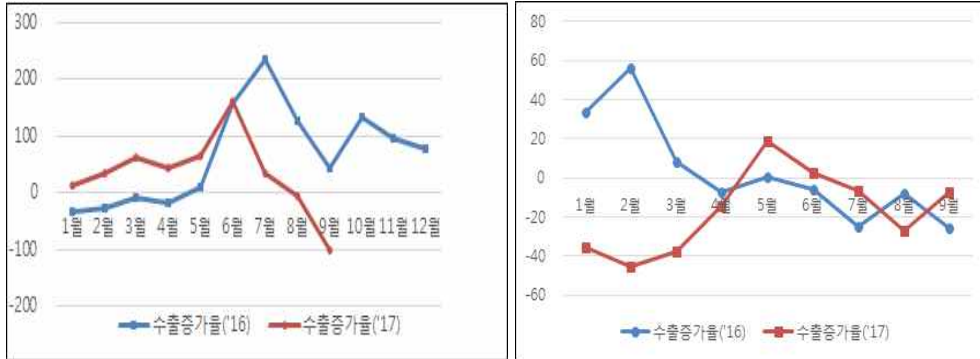
[그림 3] 북한의 대중 무연탄(좌) 및 철광석(우) 수출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접속일: 2017. 11. 28).

[그림 4] 북한의 대중 수산물(좌) 및 의류(우) 수출 증가율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접속일: 2017. 11. 28).

통과된 UNSCR 2375호와 중국 상무부 고시 52호에 따라 북한산 의류제품의 수출이 전면 금지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결의안 이전 거래에서 체결된 물량은 12월 10일까지 수입 수속을 마쳐야 하며, 12월 11일 자정부터는 해관에 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해당 제품의 수입 수속을 밟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류제품에 대한 제재 효과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3. 2017 북중무역 동향: 주요 수입품목

2017년 1~9월 북한의 5대 수입품목의 수입액은 철도용·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HS87)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증가하였다. 특이한 점은 수산물(HS03)의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69.6% 증가한 것과 의류품목(HS61)의 수입이 상반기 내내 40%를 상회한 것이다. 상반기 의류품목의 수입 증가 이유는 1) 해당 산업에서 임가공 수출을 위한 원자재 수입이 늘어났거나, 2) 북한 주민의 소득수준 개선 및 시장 확산에 따라 해당 품목의 소비가 증가한 것일 수 있다. 만약 의류품목의 수입 증가가 1)에 기인한 것이라면 9월부터 북한산 의류품목의 수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향후 해당 품목에 대한 북한의 수입 역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산물 수입 증가의 경우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

〈표 2〉 북한의 주요 수입품목 상반기 실적(2016~17년, 1~3분기 기준)

(단위: 천달러,%)

분 류		2016(1~9월)		2017(1~9월)		
품 목		HS	수입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1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85	208,676	-9.2	244,818	17.3
2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84	199,201	8.2	215,275	8.1
3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과 이와 유사한 것	54	130,196	15.3	182,080	39.9
4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	140,793	18.3	172,342	22.4
5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87	162,102	11.2	161,333	-0.5
수입총액			2,218,707	5.3	2,538,312	14.4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www.kita.net, 접속일: 2017. 11. 28).

4. 2017 북중무역 동향: 북중무역 주요 지역

랴오닝성은 북한과의 무역규모가 가장 큰 성으로 2017년 북중무역의 약 47.3%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랴오닝성의 2017년 1~3분기 대북 무역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지린성의 대북 무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하였다. 특히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23.8%나 감소한 가운데 북한의 대(對)지린성 수출이 18.0% 증가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차이는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주요 대북 수출입품목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2017년 랴오닝성의 주요 대북 수입품목은 의류와 무연탄이고, 지린성의 주요 대북 수입품목은 수산물과 철광석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2017년 2/4분기까지 중국의 대북 무연탄 및 의류 수입은 급감하였고, 수산물 및 철광석 수입은 급증하였다. 대북무역에서 랴오닝성과 지린성 간 엇갈린 운명은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표 3〉 북한의 중국 성별 무역 현황(2017년 1~3분기)

(단위: 백만달러, %)

순위	지역	수입		수출		무역총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랴오닝	1,252	13.4	617	-21.5	1,869	-1.1
2	지린	547	27.5	312	18.0	859	23.9
3	산둥	135	1.9	248	-30.8	383	-21.9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www.kita.net, 접속일: 2017. 11. 28).

5. 2017 북중무역 동향: 대북제재의 효과

대북제재의 효과는 2017년 2월부터 북한의 대중국 수출통계에 일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3~7월 북한산 무연탄의 대중국 수출금액은 '0'을 기록하였다. 북한은 철광석과 수산물 수출 증가로 무연탄 수출 급감에 따른 피해를 상쇄하고자 했으나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무연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17년 3/4분기까지 북한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로 미루어볼 때 아직까지 제재효과가 수입능력 감소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입은 3~7월에 급증했다가 8~10월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IV. 2017년 북러무역 동향

2017년 상반기(1~6월) 북러무역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73.0% 증가하였고, 2015년 동기 대비 36.5%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7년 상반기 북러무역의 규모는 같은 기간 북중무역 규모의 2.4%밖에 안되는 수준이다. 따라서 북러무역 증가효과가 북중무역 감소효과를 상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러시아가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밀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원유 및 석유제품의 대북수출 제재 효과를 다소 약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 4〉 북한의 대외무역 및 북러·북중 무역총액(2017년)

(단위: 백만달러)

구분	금액	비고
북·러 무역총액(2017년 상반기, 러시아 세관)	61.16	-
북·중 무역총액(2017년 상반기, KITA)	2,500.59	원유 미포함
2016년 북한의 대외무역총액(KOTRA)의 1/2	3,028.22	원유 포함

자료: 러시아 연방세관(<http://stat.customs.ru>, 접속일: 2017. 11. 28), 한국무역협회(KITA)(www.kita.net, 접속일: 2017. 11. 28), KOTRA(www.kotra.or.kr, 접속일: 2017. 11. 28).

참고문헌

〈웹사이트〉

KITA(<https://www.kita.net>, 접속일: 2017. 11. 28).

KOTRA(<https://www.kotra.or.kr>, 접속일: 2017. 11. 28).

러시아 연방세관(<http://stat.customs.ru>, 접속일: 2017. 11. 28).